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- 13호

「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9월 21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상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개발,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- 나. 청년정책위원회 설치(안 제9조)
- 다.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(안 제2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.go.kr).

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